

1. 개정 이유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34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및 택시 운전자격의 처분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할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 및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및 택시 운전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정비(안 제35조제7항, 별표5)
- 나. 관할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 및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21조, 제35조제5항 및 제6항)

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범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를 포함(안 별표4의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가목 중 “제55조제4항”을 “제55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56조제4항 후단”을 “제55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운전경력증명서”를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한다)”로 한다.

나.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해당자만 제출한다)

라. 반명합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제5항제2호가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계기관에”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유무”를 “유무와 양수자의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음주운전 등 「도로교

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해당자만 제출한다)

사. 반명합판 사진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제7항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이 있거나 정지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2조 중 “제2호더목1)”을 “제2호머목1)”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자동차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승용자동차
나.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다만,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별표 4의3 제1호 비고 제3호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6항”으로,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과태료 처분”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2) 위반행위란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3)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3항제3호 또는 제4
호,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및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
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및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제35조제7항 및 별표 5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알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 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면허연월일	
	사업면허번호	자동차번호	
대리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대리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월간)		
대리운전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8항 에 따른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 3. 반명함판 사진(3cm×4cm)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 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대리운전자에 관한사항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 일
------	------	------	------

양 도 인 (파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운전면허번호	

양수인 (사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자동차번호		양도가격
양도·양수사유	☐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 질병 ☐ 이민 ☐ 61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3,000원
	양수자	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2. 건강진단서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7. 반명함판 사진(3cm×4cm)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8.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도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확인서(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양수자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운전자)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행	개정안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② (생략)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 ----- ----- ----- ----- ----- ----- ----- ----- ----- ----- -----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5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생략)	1. ----- ----- 가. 제55조의2제2항----- ----- 나. (현행과 같음)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2. ----- ----- 나.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u>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u> 나. ~ 바. (생략) 사. <u>사진 2장</u> 아. (생략) ⑥ 관할관청은 제5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을 받으면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유무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⑦ 관할관청은 제6항에 따른 조회·확인 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u>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양도·양</u>	2. ----- --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해당자만 제출한다)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u>반명합판 사진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아. (현행과 같음) ⑥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유무와 양수자의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한다)---. ⑦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수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⑧ (생략)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별표 6 제2호더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른 준수사항(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정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준수사항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이 있거나 정지처분사유가 있는 경우 ⑧ (현행과 같음)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호더목1)----- ----- ----- ----- ----- ----- ----- -----.
---	--	---	---